

계약체결 불발 책임 쟁점 - 중소기업지원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, RFP 과제 선정된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 및 성공 후 발주처 지자체와 개발제품 구매계약 체결 불발 상황 - 지자체의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불법행위 책임 인정



## 1. 구매조건부 신제품 기술개발과제 협약 체결

- 과제명 : 이 사건 개발과제
- 총 개발기간 : 2013. 6. 1.부터 2014. 5. 30.까지(12개월)
- 위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(피고)과 을(원고)은 다음과 같이 개발을 체결한다.

### 제2조(기술개발의 수행)

을은 갑과 협력하여 본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 제3조(개발사업비 지급)

- ① 갑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 수요처 민간부담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### 제7조(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)

- ① 해당 기술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, 시제품, 연구기자재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, 을이 운영요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을의 소유로 한다. 다만,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과물의 소유권 및 실시권 허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### 제9조(기술개발 기준 및 구매)

- ①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개발과제의 구체적인 요구수준 및 성공 요건 등 개발 세부내용을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거나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 기술개발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

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을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갑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수의계약에 의하여 개발된 제품을 구매한다. 다만,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갑과 을 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.

## 2. 기술개발과제 수행 및 경과

- (1) 원고회사 주관기관 - 국책과제 기술개발과제 선정 - 정부출연금 184백만원 + 자기 부담금 투입
- (2) 개발과제 수행 완료 후 성공 판정
- (3) 그러나 발주처 지자체에서 신제품 구매계약 체결 거절
- (4) 피고 지자체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
- (5) 원고 회사의 주장 요지 - 구매계약체결을 전제로 지자체의 채무불이행 책임 주장  
+ 예비적으로 구매계약 체결이 없다면 지자체의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 내지 불법행위 책임 주장

## 3. 법원의 판단

1심 판결 -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. 1. 26. 선고 2016가합1096 판결

2심 판결 - 서울고등법원 2018. 12. 19. 선고 2018나2013675 판결

판단 요지 - 계약성립 불인정, 채무불이행 책임 불인정 but 지자체의 불법행위 책임 인

정 - 지자체에 대한 약 8천3백만원 손해배상 명령

#### **4. 판결이유**

##### **(1) 계약체결 불인정**

③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법령의 내용에 의하더라도, 수요처(피고)가 주관기관(원고)으로부터 개발제품을 구매하지 않거나, 제안요청서에 기재한 예상 구매액보다 적게 구매한 경우, 중소기업청장은 그 사유를 조사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수요처에 대하여 국가 연구개발 과제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일 뿐, 수요처와 주관기관 사이에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법(私法)상 구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거나, 수요처가 주관기관에 대하여 그 내용대로 구매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(관련 법령이 규정한 수요처는 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, 사기업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).

④ 결국, 피고가 원고에게 장차 구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한 것 정도로는 볼 수 있을 것이나, 이를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(단가, 수량, 구매시기 등)에 관한 의사의 합치까지 있었다거나, 이에 대해 피고가 확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.

## (2) 계약체결 과정상 불법행위 책임 인정

## 1)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### 가) 관련 판례

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(대법원 2004. 5. 28. 선고 2002다32301 판결 등 참조).

### 나) 판단

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건대,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, 피고는 이 사건 제안요청서의 제출, 이 사건 기술개발계약의 체결을 포함한 일련의 행태를 통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경우 개발제품 구매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고, 원고가 그러한 기대 내지 신뢰를 바탕으로 이 사건 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이 사건 개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음에도, 구매계약 자체에 내재한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고, 원고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사유를 들어 구매계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을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, 피고는 원고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.

## 2)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### 가) 관련 판례

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일방이 신의에 반하여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교섭을 파기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신뢰한 상대방이 입게 된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다고 믿었던 것에 의하여 입었던 손해 즉 신뢰손해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, 이러한 신뢰손해란 예컨대, 그 계약의 성립을 기대하고 지출한 계약준비비용과 같이 그러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통상 지출하지 아니하였을 비용 상당의 손해라고 할 것이며, 아직 계약체결에 관한 확고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 상태에서 계약교섭의 당사자가 계약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(대법원 2003. 4. 11. 선고 2001다53059 판결 등 참조).

국제계약, 영문계약, 계약분쟁, 손해배상, 민형사소송, Claim, License, R&D 제휴계약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